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윤영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75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0.

발 의 자:윤영찬·강득구·김민철

김승원 · 김회재 · 양정숙

오영환 · 위성곤 · 이광재

이규민 · 이용빈 · 임호선

최승재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신고,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, 4,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.

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, 방범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

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 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 1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·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 조직도 가능하며,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나.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, 미성년자, 성폭력범죄자,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(안 제5조).
- 다.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,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.
- 라.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,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

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,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8조).

- 바.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, 경찰청장·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은 공롸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2조).
- 사.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·도 연합회 및 시· 군·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아.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기부금 모금 행위·영리행위·정치활 동 등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「기부금품법」, 「공직선거법」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6조).
- 자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 단체인 자율방범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진흥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자율방범대"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 - 2. "자율방범대원"이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자율방범대장"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조직·운영단위) 자율방범대는 「경찰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1개 조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구·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도 가능하다. 제4조(조직 등의 신고) ① 자율방범대를 조직·운영하려는 사람은 그

조직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명칭
- 2. 활동구역
- 3. 대표자의 성명
- 4. 구성원(대표자를 포함한다)의 성명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
- ② 자율방범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.
 - 1. 해당 자율방범대가 속한 읍·면 또는 동의 관내 거주자가 아닌 자
 - 2. 19세 미만인 사람
 - 3.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
 - 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집행이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
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제14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
- 8.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
- 9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 중 7) 부터 9)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- 10.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
-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4호에서 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를 할 수 있다.
- 제6조(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해촉하여야 한다.
 -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과 혐의하

- 여 해촉할 수 있다.
- ④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 - 1. 관할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 - 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 - 3.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
 - 4. 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"경찰서장등"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 - 5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 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이 요청 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- 제8조(복장 및 장비) ①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 -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순찰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·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가 아니

면 자율방범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0조(교육·훈련) ① 경찰서장등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 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도 및 감독) ① 경찰서장등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 대원의 활동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업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포상) 경찰청장,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13조(중앙회 및 연합회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

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 앙회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 라 한다)에 시·도 연합회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 연합대를 설 립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도 연합회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, 시·군·구 연합대는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다.
- ③ 중앙회, 시·도 연합회 및 시·군·구 연합대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금지의무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
 - 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 - 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- 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 - ② 자율방범대와 제13조에 따른 중앙회 및 연합회(이하 "중앙회등"이라 한다)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자율방범대장 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가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자율방범대장과 중앙회등의 대표자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후 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
- 제15조(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, 복장·장비의 구입 및 운영, 교육·훈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 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가 보험에 가입하 는 경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 - 1.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- 2.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 - 3. 제11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
- 제16조(벌칙) ①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」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 - ②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사람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
자율방범대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
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.